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 서류 서식

2026. 3.

□ 신청시 제출 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서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서식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서식5)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지자체
6	(서식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서식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8	(서식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제출시 유의 사항

- ☞ 반드시 아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
-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가능
- ☞ 신청자(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 본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내 작성요령, [참고1], [참고2], [참고3] 은 삭제 후 제출

(제출시 해당 페이지 삭제)

연구개발계획서				[V] 신청용		보안등급			
				[] 협약용		일반[V], 보안[]			
중앙행정기관명		산업통상부		사업명	세부사업명		과제명 기재		
전문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역사업명		과제명 기재		
공고번호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000 호		연구개발과제번호		신청시에는 공란			
선정방식		정책지정[] 지정공모[V] 품목공모[] 분야공모[] 자유공모[]							
기술분류	산업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과제명					
		영문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1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2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3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4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등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단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공동		
			실무자				공동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지자체 등)			책임자				지자체	○○도	
			실무자				지자체	○○시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이	한	지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과제 선정 및 협약시 기입).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산업기술분류: 과제에 해당하는 산업기술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명과 비중을 기재하며, 3개 순위를 합산하여 비중이 100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1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하며, 3개 순위를 합산하여 비중이 100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 6) 컨소시엄 기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19. 기관유형
 -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5)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8)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10)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요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세부사업명		과제명 기재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과제명 기재				연구개발과제번호		신청시에는 공란			
기술 분류	산업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연구개발과제명		과제명 기재									
전체 연구개발기간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그 외 기관·단체·개인 지원 연구개발비(지자체 등):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응용[] 개발[] 기타[O]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비R&D (기반조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단계 (1년차)		목표					
						내용					

	1 단계 (2년차)	목 표	
		내 용	
	1 단계 (3년차)	목 표	
		내 용	
	1 단계 (4년차)	목 표	
		내 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목 차

I . 수행계획	0
1. 과제 개요	0
1) 산업(기술) 개요	0
2) 국내·외 산업동향	0
3) 인프라 구축현황	0
4) 수요 분석	0
2. 과제 필요성	0
1) 기반구축사업 SWOT 분석	0
2) 정부지원 필요성	0
3) 산업 연계효과	0
4) 사업추진 역량	0
3. 과제 목표 및 내용	0
1) 최종 목표	0
2) 성과지표 및 연차별 목표	0
3)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0
4) 추진내용	0
5) 수행일정	0
4. 과제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0
1) 추진전략·방법	0
2) 추진체계	0
5.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0
1) 성과 활용방안	0
2) 기대 효과	0
3) 자원조달 및 자립화 전략	0

목 차

6.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0
1) 안전관리 이행계획	0
2) 과제 관련 안전관리 방안(안전관리형 과제 지정시)	0
II. 수행역량 및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0
1. 연구개발기관 현황	0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0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0
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0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0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0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0
2) 연구개발비 총괄 사용계획	0
3) 연차별 연구개발비 상세 사용계획 [주관연구개발기관 : ○○○○○]	0
4) 연차별 연구개발비 상세 사용계획 [공동연구개발기관 : ○○○○○]	0
5) 연차별 연구개발비 상세 사용계획 [공동연구개발기관 : ○○○○○]	0
:	
붙임.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0

I. 수행계획

1. 과제개요

1) 산업(기술) 개요

가. 정의 및 범위

나. 특성

다. 비전-발전방향-국가연구개발 정책과의 연관성

- 비전
- 발전방향
- 관련 산업 및 기술
- 국가 산업정책과의 연관성
- 중요성

■ 수행과제의 정의 및 범위, 특성, 전후방산업 연관성 등 개요 기재

2) 국내·외 산업동향

가. 시장동향

나. 기술동향

다. 기업동향

■ 국내외 시장동향, 기술동향, 기업동향(공급사슬 변화 등) 기재

3) 인프라 구축현황

가.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기관명 (소재지)	기술분야	구축장비 및 서비스 제공 분야	비고 (차별화 또는 연계방안 등)
000연구원 (지역명)			

나. 해외 인프라 구축 현황

기관명 (소재지)	기술분야	구축장비 및 서비스 제공 분야	비고 (차별화 또는 연계방안 등)
000연구원 (국가명)			

- 출연연, 연구기관, 지역혁신센터 및 지역특화센터 등을 포함한 국내 유사 인프라 구축기관과 해외 유사 인프라 구축기관의 현황을 작성

4) 수요분석

가. 수요기업 현황분석

NO	기업명	업종	주요업무	매출액 (억원)	고용현황 (명)	부설 연구소 (○, X)	지역
1							
2							
3							
4							
5							
...							
합계							

나. 수요기업 협력방안

NO	기업명	기업 지원 세부추진내용	협력방안								
			장비 활용	공동 연구	기술 지도	교육 연계	창업 지원	기술 이전	기술 상당	정보 제공	기타
1											
2											
3											
4											
5											
...											
합계											

- 과제수행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현황 기재
- 협력방안 세부항목을 중복하여 “V” 표기

2. 과제 필요성

1) 기반구축사업 SWOT 분석

		강점(S)	약점(W)
		-	
기회 (O)		(SO전략)	(WO전략)
위협 (T)		(ST전략)	(WT전략)

- 국내외 관련 인프라 현황분석 등 중심으로 기술·기반구축 관점에서 서술

2) 정부지원 필요성

가. 자체해결 한계점

나. 정부지원을 통한 해결방안 및 기대효과

- 해당 사업에 대한 SWOT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지원의 필요성 기재
- 자체해결 한계점은 구축예정 인프라에 대한 수요에 대해 서술
- 정부지원 기대효과는 기업성장 및 고용창출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서술

3) 산업 연계효과

가. 산업 · 기업 연계효과

나. 지역(전략)산업 연계(해당 시)

- 본 과제 수행을 통한 기존 산업·기업성장 연계효과 기재

4) 사업추진 역량

가. 주요 사업추진 실적

기관명	사업내용 및 활용현황	연도	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 내용 : ○ 활용현황 : 		

■ 연구개발기관의 유사 사업 수행실적 기재 및 본 사업 기여효과를 서술

나. 인적 현황

다. 보유 인프라 현황

■ 동 과제와 연관된 센터 및 장비구축 현황, 입주기업 현황 등을 서술

3. 과제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서술) ※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

가. 과제목표

- ~~~~~~(과제제안요청서(RFP)의 과제목표를 최대한 준용할 것)

나. 주관연구기관 역할 및 목표

- ~~~~~~

다. 공동연구개발기관 역할 및 목표

- ~~~~~~

- 과제의 최종 목표 및 성과에 대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각 주체별 역할 및 명확한 목표설정 필요

< 최종목표 및 수행내용(요약) >

구분	연구개발기관	최종목표	비중	수행내용
센터구축		○ -		○ -
		○ -		○ -
장비구축		○ -		○ -
		○ -		○ -
기술지원		○ -		○ -
		○ -		○ -
...		○ -		○ -
		○ -		○ -
합계	-		100	-

- 상기 구분에서 제시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목표, 비중(총합이 100), 세부목표 등을 포함하여 1페이지 이내로 기재함

2) 성과지표 및 연차별 목표

가. 성과지표 및 연차별 목표(총괄)

구분	성과지표 (단위)	비중	연차별 목표						비고
			계	1단계			2단계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센터구축									RFP
장비구축	장비구축건수(건)								RFP
	장비가동률(%)								RFP
	공동활용도								필수
기술지원									RFP
									RFP
									RFP
									선택
합계		100							

- ※ 과제별 RFP 상 필수 성과지표는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 과제별 RFP 상 필수 성과지표 중 [참고1] '주요 성과지표 및 정의'에 동일한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반드시 [참고1] 성과지표의 정의/산식/방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장비 가동률, 장비 구축, 장비활용 수익금 등)
- ※ 과제별 RFP 상 필수 성과지표 중 [참고1] '주요 성과지표 및 정의'에 동일한 성과지표가 없는 경우, RFP에 제시한 목표치 및 설명을 반영하고 [참고1] '주요 성과지표 및 정의'의 유사 지표를 참고하여 설계
- ※ 지표별 비중 합계가 100이 되도록하며, 그 외 지표 작성시 [참고1] '주요 성과지표 및 정의' 참고

나. 성과지표 및 연차별 목표(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기관	구분	성과지표 (단위)	연차별 목표					비고
			1단계				합계	
			1차	2차	3차	4차		

[참고1] 주요 성과지표 및 정의 (제출시 본 표 삭제)

지표 구분	지표명 (단위)	정의/산식/방법	
필수 (공통)	장비가동률 (%)	정의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장비의 가동률
		산식	$\sum (\text{총 시설장비 가동시간}) / \sum (\text{총 시설장비 가용시간}) \times 100 (\%)$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동시간 : 실질가동시간과 보조가동시간의 합 * 실질가동시간 : 시험, 분석, 계측, 교육, 생산 등을 위해 연구시설·장비를 실제로 가동한 시간 * 보조가동시간 : 사용 전 장비 예열, 유지보수 작업, 사용 후 장치 청소/세척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연구시설·장비를 가동한 시간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켜져 있는 시간 제외) 가용시간 : 근무일수 $\times$ 8시간 = 연 2,000시간 * 연간 근무일수 : [주5일 $\times$ 50주 = 250일]을 기준으로 함 측정대상 :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이 투입된 신규 구축 또는 성능개선(업그레이드) 시설장비 i-Tube 시스템에 등록된 장비별 가동실적을 통해 가동률 산출
필수 (공통)	장비 공동 활용 기업 수(개)	정의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장비당 평균 공동활용기업(기관) 수
		산식	$\sum (\text{장비별 공동활용기업(기관) 수(중복제거)}) / \sum (\text{가동장비 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동장비별로 동일기업(기관)이 다수 이용한 경우에는 1건으로 산정 (장비별 중복 활용기관 제거, 장비간 중복은 인정) 측정대상 :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이 투입된 신규 구축 또는 성능개선(업그레이드) 시설장비 중복제거 후 공동활용도 산출 예시 * A장비 이용실적(a기업 4회, b기업 2회, c기업 1회) => 3개 기업 * B장비 이용실적(a기업 3회, d기업 1회) => 2개 기업 * C장비 이용실적(a기업 1회, e기업 1회) => 2개 기업 공동활용도 = (A장비 3 + B장비 2 + C장비 2) / 3 = 2.3 i-Tube 시스템에 등록된 장비별 가동실적을 통해 가동률 산출
필수 (공통)	장비 활용 수익금 (백만원)	정의	본 사업 과제에서 구축된 시설·장비의 활용,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해 수혜기업·기관을 지원한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
		산식	$\sum (\text{연간수익금 누적금액}) - \sum (\text{재료비 등 투입 누적금액})$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서비스 지원(장비 공동활용, 시험평가·인증, 시제품 제작, 기술 지도 등), 기술·제품 사업화 지원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에서 재료비 등 집행을 제외한 수익금 * 정부·지자체 등의 지원예산은 수익금에서 제외 연간 성과조사 별도 실시
필수 (공통)	장비구축 (건)	정의	본 사업 과제를 통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완료 건수 (건)
		산식	$\sum (\text{시설장비구축 완료 건수}) (\text{건})$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기 장비구축 과정을 모두 완료한 건수를 의미 * 수요조사→장비선정→내부 장비심의위→중앙장비심의위→구매의뢰→구매계약→통관, 운송, 입고→검수 및 설치 * 구매단가 및 과제별 추진환경에 따라 일부 절차는 바뀔 수 있음 측정대상 :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이 투입된 신규 구축 또는 성능개선(업그레이드) 시설장비 i-Tube 시스템에 등록된 장비별 가동실적을 통해 가동률 산출

지표 구분	지표명 (단위)	정의/산식/방법	
선택	시험·평가·인증 지원건수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시험·평가·인증 지원 건수
		산식	▸ Σ (시험·평가 결과서 및 공인된 인증서 발행 건수)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 수혜기업의 제품기획·설계 - 시제품 - 완제품 - 고장분석·재설계 - 사업화 지원 단계에서 발생하는 전주기 기술지원을 포괄 ▸ 연간 성과조사 별도 실시
선택	시제품 제작 지원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건수
		산식	▸ Σ (결과활용기관 제품의 양산 전 시제품 제작 지원 결과보고서 건수)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 수혜기업의 제품기획·설계 - 시제품 - 완제품 - 고장분석·재설계 - 사업화 지원 단계에서 발생하는 전주기 기술지원을 포괄 ▸ 연간 성과조사 별도 실시
선택	기술지도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지도(컨설팅) 건수
		산식	▸ Σ (결과활용기관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 컨설팅 실시 건수)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 수혜기업의 제품기획·설계 - 시제품 - 완제품 - 고장분석·재설계 - 사업화 지원 단계에서 발생하는 전주기 기술지원을 포괄 ▸ 1회성 질의에 대한 단순 응대는 기술자문에 해당하여 기술지도와 구분 ▸ 연간 성과조사 별도 실시
선택	서비스 도출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기업지원 서비스를 도출하고 i-Tube에 등록한 건수
		산식	▸ Σ (i-Tube 서비스 등록 건수)
		방법	▸ i-Tube에 등록한 서비스(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활용한 서비스) 기준
선택	서비스 지원 (건)	정의	▸ i-Tube 등록 서비스를 활용한 기업지원 건수
		산식	▸ Σ (i-Tube 등록 서비스 활용 기업지원 건수)
		방법	▸ i-Tube에 등록한 서비스(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활용한 기업지원 건수
선택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원)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의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한 기여율을 반영한 매출액 실적
		산식	▸ Σ (수혜기업의 사업화 매출액 X 기여율)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 기여율 반영 사업화 매출액 산출 예시 * A기업 제품 매출단가 50만원 x 100개 x 기여율 5% = 250만원 B기업 제품 매출단가 2,000만원 x 30개 x 기여율 1% = 600만원 사업화 매출액 = 250만원 + 600만원 = 850만원 ▸ 연간 성과조사 별도 실시

지표 구분	지표명 (단위)	정의/산식/방법	
선택	건축공정 진행률 (%)	정의	▸ 전용공간(기반구축센터) 건축공정 진행단계 달성률 (건축 해당시)
		산식	▸ 달성단계 / 총 진행단계 X 100 (%)
		방법	▸ 총 건축공정 진행단계 (총13단계) * ①부지선정 및 인허가 획득→②토지매입→③건축사 선정→④계획설계(법규 검토, 기본계획 도면작성)→⑤실시설계(세부재료, 디자인, 세부도면 등)→⑥건축허가→⑦시공사선정→⑧착공신고 및 착공→⑨공사시행→⑩감리→⑪사용승인신청→⑫건축물등기→⑬준공 ▸ 산식 예시 * 실시설계까지 진행된 경우 : 5단계 / 13단계 = 38% ▸ 과제별 추진환경에 따라 일부 절차는 바뀔 수 있음
선택	시험평가법 개발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평가법을 개발한 건수
		산식	▸ ∑ (시험평가법 개발 건수) (건)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 시험평가법개발보고서(SOP 포함) 건수를 기준으로 함
선택	인증 지원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 제품에 대해 인증 절차를 대행하거나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건수
		산식	▸ ∑ (인증 지원 건수) (건)
		방법	▸ 타 국내·국외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 절차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본 사업 과제에서 지원한 건수를 의미
선택	고장분석· 재설계 지원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 제품에 대해 고장분석·재설계를 지원한 건수
		산식	▸ ∑ (고장분석·재설계 지원 건수) (건)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선택	공인인증 체계 구축건수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 관련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의 공인 인증 등을 지원하기 위해 타 국내·외 기관에서 인정기관 지위를 확보한 건수
		산식	▸ ∑ (인증항목 확보 건수)
		방법	▸ 실증 인프라 및 표준 시험 기법을 활용한 시험 결과를 KOLAS, 선급, 이에 준하는 시험기관으로 공인시험/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정 기관 자격 획득/유지 ▸ 상호인정협정(MRA)도 인정(1단계시험성적서 상호인정, 2단계인증서 상호 인증)
선택	표준 제안건수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외 표준관련 기관에 신규작업표준안(PWI) 이상의 표준관련 제안 건수
		산식	▸ ∑ (표준제안 건수)
		방법	▸ ISO 등 국제표준, 국가표준, 산업표준 등 표준화제안
선택	실증 지원 건수 (건)	정의	▸ 연구개발기관(사업 수행기관)이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행과정에서 확보한 성과로서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의 실증 평가를 지원한 건수
		산식	▸ ∑ (실증 지원 건수)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 소재, 공정, 제품 등에 대한 신뢰성, 유효성, 안전성, 독성 평가 등 실증 지원 건수

지표 구분	지표명 (단위)	정의/산식/방법	
선택	기술이전 (건)	정의	▸ 연구개발기관(사업 수행기관)이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행과정에서 확보한 성과에 대해 수요기업과 기술실시 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건수
		산식	▸ $\sum$ (특허, 노하우 등 기술이전 계약 체결 건수)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 계약서 체결 건수를 기준으로 함
선택	기술·제품 정보 DB 제공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에게 기술·제품 정보를 제공한 건수
		산식	▸ $\sum$ (기술·제품 정보 DB 제공 건수)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 단순 웹페이지 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집적화된 DB를 결과활용 기관이 활용한 건수를 의미
선택	기술·제품 판로개척 지원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의 국내·외 제품 판로를 개척 지원 성공한 건수
		산식	▸ $\sum$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성공 건수)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 단순 상담회 개최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최 결과 신규 판로 개척까지 연결되는 지원을 의미
선택	네트워크 운영 건수 또는 참가자 수 (건, 명)	정의	▸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육·포럼·세미나 등 네트워크 운영 건수 또는 교육·포럼·세미나 등 참가자 인원 수
		산식	▸ $\sum$ (교육·포럼·세미나·전시회·상담회 등 운영 건수) ▸ $\sum$ (교육·포럼·세미나·전시회·상담회 등 참가자 인원 수)
		방법	▸ 운영 건수(input)보다 참가자 인원수(output)가 중요 ▸ 과제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등 상시 성격의 회의는 제외 ▸ 사업 수행기관이 주관한 운영 건수 / 참가자 인원 수를 의미하며, 외부 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단순 참여는 실적이 아님에 유의
선택	수혜자 만족도 (점)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을 지원한 활동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사업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한 만족도 점수
		산식	▸ $\sum$ (만족도 점수) / $\sum$ (만족도 조사대상 수) (점)
		방법	▸ 시설장비 이용기업 또는 기술서비스 수혜기업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설계하되, 조사결과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수치화
선택	수혜기업 신제품 개발 또는 상용화 성공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의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한 결과 수혜기업이 신제품 개발 또는 상용화에 성공한 건수
		산식	▸ $\sum$ (수혜기업의 신제품 개발 성공 건수) ▸ $\sum$ (수혜기업의 상용화 성공 건수)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 사업 수행기관의 기술개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지표 구분	지표명 (단위)	정의/산식/방법	
선택	수혜기업 지재권 출원 또는 등록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한 결과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이 특허·지재권 등록에 출원 또는 등록에 성공한 결과 건수
		산식	▸ Σ (수혜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 ▸ Σ (수혜기업의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 사업 수행기관의 지재권 출원·등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선택	수혜기업의 선진국 제품 국산화 성공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과활용기관(수혜기업 등)이 선진국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한 결과 건수
		산식	▸ Σ (수혜기업의 선진국 제품 국산화 성공 건수)
		방법	▸ 구축 인프라는 시설장비·SW·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선택	글로벌 협력 (건)	정의	▸ 본 사업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이 해외 기관·기업과 글로벌 협력(MOU 체결 등)에 성공한 건수
		산식	▸ Σ (글로벌 협력 건수)
		방법	▸ 사업 수행기관이 수혜기업을 보다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와 체결하는 MOU 등을 의미함
자율	자율 지표명 (단위)	정의	▸ 상기 지표 이외에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지표 설정 가능
		산식	▸ 자율 산식
		방법	▸ 자율 설명

(상기 [참고1] 페이지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삭제)

3)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가. 성과지표 목표 및 설정근거

성과지표	목표 및 산출근거			
	성과지표 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및 방법	성과증빙
장비구축 (필수)	◦ (예시) ○○○장비 등 00종 구축	◦(예시) 해당 장비의 필요성 및 수량 산출 근거(수요조 사 자료 제시 등)		장비별 I- Tube 등록증
장비가동률 (필수)	◦ (예시) 최종 장비가 동률 00% 이상 - 1차년 : 00% - 2차년 : 00% - 3차년 : 00%	◦(예시) 00 장비의 특성상 과제 수행 기간 내 00% 가 최적의 목표인 근거	◦ 측정산식 : { $\sum$ (연간 시설장비 가 동시간 / 시설장비 가용시간) } / $\sum$ (가동률 계산 장비) ◦ 측정대상 : 구축 또는 개선한 시설장비 ◦ 측정방법 : 장비별 사용일지 전수조사	i- Tube 장비가동일지
000 (선택)	◦ ◦	◦ ◦		
000 (자율)	◦ ◦	◦ ◦		

- 과제 특성에 따라 기반구축 목표 및 내용을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성과지표 설정근거를 제시
- **과제별 RFP 상 필수 성과지표는 성과지표명에 (필수)로 구분하고, 그 외 성과지표는 [참고1] ‘주요 성과지표 및 정의’의 지표구분에 따라 구분**
- [참고1]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필수 성과지표는 RFP에 제시한 목표치 및 설명을 반영하고 [참고1] ‘주요 성과지표 및 정의’의 유사 지표를 참고하여 설계 후 상기 표에 작성
- 필수 / 선택 지표에 해당하는 경우 앞 페이지의 [참고1] 성과지표 내용에 맞게 그대로 기재 후 [참고1] 삭제 자율지표를 자체적으로 설계한 경우 상기 표에 자율적으로 작성.

4) 추진 내용

가. 주요내용(서술)

- 과제 비전, 목적,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내용을 상세히 서술
~~~~~(과제제안요청서(RFP)의 과제내용을 최대한 준용할 것)

##### 나. 상세 추진내용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내용, 운영위원회 및 자체 장비도입심의회 운영계획 등 상세기재  
~~~~~(과제제안요청서(RFP)의 과제내용을 최대한 준용할 것)

다. 연차별 중점 추진내용

| | | | | (단위: 천원) |
|-----|------|-----------|--------------------------------------|--------------------|
| | | | | 주요 수행내용별
예산 사업비 |
| 구분 | 사업내용 | 주요 내용 | | |
| 1단계 | 1차년도 | 0 건축(해당시) | 0 좌측 세부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화된 추진내용들을 기재 | |
| | | 0 장비구축 | 0 | |
| | | 0 기술지원 | 0 | |
| | | | 0 | |
| | | | 0 | |
| | 2차년도 | | 0 | |
| | | | 0 | |
| | | | 0 | |
| | | | 0 | |
| | | | 0 | |
| | 3차년도 | | 0 | |
| | | | 0 | |
| | | | 0 | |
| | | | 0 | |
| | | | 0 | |
| | 4차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중점 추진내용을 상세히 기재
- 예산 사업비는 출연금(국비)과 지방비+민자를 합하여 기재
- 건축비는 예산편성 되어있는 과제만 작성

5) 수행일정

가. 1단계 1년차

| 구분 | 세부 내용 | 추진 일정 (월) | | | | 비중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건축 | | | | | | |
| | | | | | | |
| 장비구축 | | | | | | |
| | | | | | | |
| 기술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1단계 2년차

| 구분 | 세부 내용 | 추진 일정 (월) | | | | 비중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건축 | | | | | | |
| | | | | | | |
| 장비구축 | | | | | | |
| | | | | | | |
| 기술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1단계 3년차

| 구분 | 세부 내용 | 추진 일정 (월) | | | | 비중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건축 | | | | | | |
| | | | | | | |
| 장비구축 | | | | | | |
| | | | | | | |
| 기술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1단계 4년차

| 구분 | 세부 내용 | 추진 일정 (월) | | | | 비중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건축 | | | | | | |
| | | | | | | |
| 장비구축 | | | | | | |
| | | | | | | |
| 기술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제수행 일정은 연도별 추진내용과 부합되게 구체적으로 기재

4. 과제 추진전략 · 방법 및 추진체계

1) 추진전략 · 방법

가. 기반구축 추진전략 및 로드맵

- 장비구축 방향 및 연차별 구축전략 포함하여 서술(건축, 인증획득 등 지원체계 포함)
- 전문 기반·기술 확보, 특화전략, 전담인력 확보계획 및 확보방안, 전용공간 확보전략 등 상세 작성

<로드맵 예시(제출시 삭제)>



나. 시설·장비 도입 및 활용 계획

(1) 기반구축 사업 상세내용

- 수행내용 (건축 관련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수행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재
 - 연관 성과지표명 :
- 수행내용 (장비구축 관련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수행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재
 - 연관 성과지표명 :

(2) 운영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운영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
- 운영위원회 구성현황

| 순번 | 구분 | 성명 | 직위 | 소속 | 비고 |
|----|----------------|-----|-----|--------------|------|
| 1 | 정부 | 홍길동 | 사무관 | 산업통상자원부 ○○○과 | 당연직 |
| 2 | 전문기관 | 임꺽정 | 실장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당연직 |
| 3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 | | 당연직 |
| 4 |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 | | 당연직 |
| 5 | 학계, 연구계, 산업계 | | | | 선임직 |
| 6 | 주관기관 | | | | 운영간사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의 방향설정, 변경검토, 사업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등 해당 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구성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1조(운영위원회)에 따라 구성, 산업부 담당관, 전문기관 부서장, 연구책임자(주관, 공동), 해당분야 산학연 전문가, 연관기업 등 7인 내외로 구성(외부기관 소속 전문가 1/2 이상)

○ 장비심의위원회 구성현황

| 순번 | 구분 | 성명 | 직위 | 소속 | 비고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장비의 도입, 저활용·유휴 장비의 판정, 불용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구성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9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0조(장비심의위원회)에 따라 구성, 해당분야 기술, 경제 전문가, 연관기업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 심의대상 장비와 관련된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와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연차별 시설·장비 구축 목록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3천만원 이상 필수 작성)

(단위: 천원/대)

| 구분 | 국문 장비명
(영문 장비명) | 모델명 | 주요
사양 | 제작
국가 | 제작
회사 | 단가
(A) | 수량
(B) | 예상
가격
(C=A*B) | 구축
방식 | 현금
/현물 | 구입
예정
연월 | 구축
유형 |
|-------------|--------------------|-----|----------|----------|----------|-----------|-----------|---------------------|----------|-----------|----------------|----------|
| 1
단
계 | 1
차
년
도 | | | | | | | | 구매 | | | 신규구축 |
| | | | | | | | | | 임대 | | | 성능개선 |
| | | | | | | | | | 개발 | | | 유지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2
차
년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3
차
년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4
차
년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 | - | | |

- 구축방식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사항 기재
- 구축장비는 [붙임1] 구축 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 필수 작성
- 장비사양 및 단가변동은 협약변경 사항(필요시 도입 재심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과제수행을 위해 장비구입비 등은 최신 자료(견적서 등)를 확인하여 계상
- 3천만원 이상 장비 도입시 아래 요령 및 표준지침을 따라야 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의거하여 3천만원 이상(도입가 기준) 1억원 미만(국비 기준) 장비는 전문기관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 비R&D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국비 기준) 장비는 장비전담기관의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의거 R&D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국비 기준)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회의를 거쳐야 함
- 3천만원 이상 장비 도입 관련 상기 심의 결과 가결(승인)된 장비 구매시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장비 구매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며,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함, 다만 정보시스템 구매 시 정보보안 지침 등 관련 규정의 구매절차 준수사항을 따름
 -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0조(구매원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6조(구매원칙)
- 구축된 장비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로 i-Tube 시스템(www.itube.or.kr)에 등록하고 성과활용기간까지 유지하며 성과활용기간 이후에는 공동활용허용으로 변경

(2) 연구시설·장비 주요 사용 용도(3천만원 이상 필수 작성)

| 구분 | 연구시설·장비명 | 주요 용도 | 설치장소 |
|-------------|----------|-------|------|
| 1
단
계 | 1차
년도 | ■ | |
| | | ■ | |
| | | ■ | |
| | 2차
년도 | ■ | |
| | | ■ | |
| | | ■ | |
| | 3차
년도 | | |
| | | | |
| | | | |
| | 4차
년도 | | |
| | | | |
| | | | |

(3)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계획

(단위: 천원/명)

| 연구개발
기관명 | 연구시설·장비명 | 구분
(기존/신규) | 운영기간 | 비용 | | 전담
인력 수 | 활용계획 |
|-------------|----------|---------------|-------|-----------|-----------|------------|------|
| | | | | 연간
운영비 | 과제
반영비 | | |
| | | | yy~yy | | | | |
| | | | yy~y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후보장비 목록

(단위: 천원)

| 연구개발 | 국문 장비명 | 모델명 | 주요 | 제작 | 제작 | 단가 | 수량 | 예상 | 구입예정 | 주요 | 설치 |
|------|--------|-----|----|----|----|----|----|----|------|----|----|
|------|--------|-----|----|----|----|----|----|----|------|----|----|

| 기관명 | (영문 장비명) | | 사양 | 국가 | 회사 | (A) | (B) | 가격
(C=A*B) | 연월 | 용도 | 장소
(세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사업수행 중 장비심의시 단가 조정, 당해연도 구축장비의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차액 발생 시 당해연도에 우선적으로 구축할 장비 목록 기재
 - 실제 차액이 발생하여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상기 목록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승인) 후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계획 변경 후 집행 가능
 - 전문기관 담당자는 사전 협의(승인)요청시 협약기간내 구축 계획(지출원인행위, 구입예정연월) 등을 검토 예정

라. 경쟁력 확보전략 ※ 3p 이내

(1) 전문 기반(기술) 확보 및 전문분야 특화 전략

- 과제수행을 통해 파생되는 전문 기반.기술 확보 및 전문분야 특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서술

(2) 전담부서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

- 전담인력확보 계획은 활용목적이 분명하고, 확보전략[역할(장비운영, 기술서비스 등), 자격조건(학력, 전공분야, 경력 등), 확보시기] 등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실현가능한 내용을 기재

(3) 전용공간 확보 전략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작성)

- 위치(주소) :
- 규모 : 부지면적 m^2 , 건축연면적 m^2
- 용도 :

- 전용공간의 면적, 위치, 구조를 상세히 기재하고, 구축추진 일정은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실현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 후 충분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서술
- 별도 제출하는 전용공간 확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

(4) 추진체계



- 컨소시엄 구성 및 기관별 역할 분담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도식 수정 가능)

5.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2p 이내

1) 성과 활용방안

- 과제 수행으로 예상되는 성과,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재

2) 기대효과

- 과학·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파급효과 등을 기재

3) 자원조달 및 자립화 전략

가. 자원조달 전략 및 계획(성과활용기간 포함)

- 연도별, 세부 기반구축 수행내용별 계획에 의거하여 서술식으로 작성

나. 연도별 예상 수익 총괄

(단위: 천원)

| 구분 | 연구개발기관명 | 연차 | 수입(A) | 지출(B) | 수익(A-B) |
|----------------|---------|-----|-------|-------|---------|
| 연구
개발
기간 | | 1년차 | | | |
| | | 2년차 | | | |
| | | 3년차 | | | |
| | | 4년차 | | | |
| | | 소 계 | | | |
| | | 1년차 | | | |
| | | 2년차 | | | |
| | | 3년차 | | | |
| | | 4년차 | | | |
| | | 소 계 | | | |
| | 총 계 | 1년차 | | | |
| | | 2년차 | | | |
| | | 3년차 | | | |
| | | 4년차 | | | |
| | | 총 계 | | | |
| 성과
활용
기간 | | 1년차 | | | |
| | | 2년차 | | | |
| | | 3년차 | | | |
| | | 4년차 | | | |
| | | 5년차 | | | |
| | | 소 계 | | | |
| | | 1년차 | | | |
| | | 2년차 | | | |
| | | 3년차 | | | |
| | | 4년차 | | | |
| | | 5년차 | | | |
| | | 소 계 | | | |
| | 총계 | 1년차 | | | |
| | | 2년차 | | | |
| | | 3년차 | | | |
| | | 4년차 | | | |
| | | 5년차 | | | |
| | | 총 계 | | | |

■ 용어의 정의

- 수입(A) :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
 - * 본 과제 관련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기술지원, 교육, 공간의 임대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
 -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지원 예산은 수입으로 산정할 수 없음(예 : 구축 장비와 연계해 수주한 정부 사업비)
- 지출(B) :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 관련된 소요비용
 - * 재료비, 전담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등
- 수익(A-B) :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지출(B))을 제외한 순수입금
 - * 해당 수익이 동 사업에 재투자 가능하여야 함

■ 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0조의2(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1조(장비이용료 관리),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48조(수익금의 관리), 49조(수익금의 사용 등)에 따라 수익금은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간 중에는 적립하고 성과활용기간 중에는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 등 규정에서 정한 용도에 활용하여야 함
 -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성과활용기간 이전에 수입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수익금의 사용 등을 준용함

다. 연도별 예상 수입 및 지출 추정 근거

○ 연구개발기간

(단위: 천원)

| 구분 | 연차 | 수입구분 | 추정 근거 | 예상수입 |
|----------------|-----|------|-------|------|
| 연구
개발
기간 | 1년차 | 장비활용 | | |
| | | 기술지원 | | |
| | | 교육 | | |
| | | 소 계 | | |
| | 2년차 | | | |
| | | 소 계 | | |
| | 3년차 | | | |
| | | 소 계 | | |
| | 4년차 | | | |
| | | 소 계 | | |
| | 총 계 | 장비활용 | | |
| | | 교육 | | |
| | | 기술지원 | | |
| | | 총 계 | | |

○ 성과활용기간

(단위: 천원)

| 구분 | 연차 | 수입 추정근거(A) | | | 지출 추정근거(B) | | | 수익
(A-B) |
|----------------|-----|------------|--------------------------------|---------|------------|--------------------------------|--------|-------------|
| | | 수입구분 | 추정근거 | 예상수입 | 지출구분 | 추정근거 | 예상지출 | |
| 성과
활용
기간 | 1년차 | 장비 활용 | 항목×00회×12/12개월
×0000원=0000원 | 200,000 | 재료비 | 항목×00회×12/12개월
×0000원=0000원 | 60,000 | |
| | | 기술지원 | | 70,000 | 인건비 | | 30,000 | |
| | | 교육 | | 30,000 | | | | |
| | | 소 계 | | 300,000 | 소 계 | | 90,000 | |
| | 2년차 | | | | | | | |
| | | 소 계 | | | 소 계 | | | |
| | 3년차 | | | | | | | |
| | | 소 계 | | | 소 계 | | | |
| | 4년차 | | | | | | | |
| | | 소 계 | | | 소 계 | | | |
| | 5년차 | | | | | | | |
| | | 소 계 | | | | | | |
| | 총 계 | 장비활용 | | | 재료비 | | | |
| | | 기술지원 | | | 인건비 | | | |
| | | 교육 | | | | | | |
| | | 총 계 | | | 총 계 | | | |

-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소요비용 기준에 대하여 기재
- 추정근거 산출시 예측 가능한 수요 규모, 서비스 제공 단가 등을 명시할 것
 - * 예) 항목 × 횟수(수량) × 12/12개월 × 단가 = 금액
- 상기 표의 내역(수입, 지출, 수익)은 '나.연도별 예상 수익 총괄'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함

6.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1) 안전관리 이행계획 (모든 과제 필수 작성)

(1) 안전책임자의 지정·운영

- 과제 수행기간 동안의 안전책임자를 지정

| 번호 | 구분 | 소속 기관 | 성명 | 직급 ¹⁾ | 생년 월일 (YYMMDD) | 성별 | 전공 및 학위 | | | | 담당 업무 |
|----|----|--------|-----|------------------|----------------|----|---------|-------|------|----|-------|
| | | | | | | | 학교 | 취득 년도 | 전공 | 학위 | |
| 1 | 주관 | ○○ 연구원 | 홍길동 | 책임 | 610101 | 남 | ○○대 | 1900 | 안전공학 | 박사 | |

(2) 안전관리규정의 제정·운영

- 안전관리규정이 있는 경우 제정일자, 운영방법 기재하고 없는 경우 제정 계획 등 기재

(3)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간접비로만 편성해야 함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및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로서 인건비총액의 1~2%를 예산으로 반영해야 함 (출처: 연구실안전관리법)
 - 대학, 대학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 총액의 1%이상 2%이하
 - 기업부설연구소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인건비 총액의 2% 이하
- 예: 방진복, 안전모, 방진장갑, 폐액 등

(4)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

-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 절차 및 체계도 작성

(5)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 절차 및 체계도 작성

(6) 안전교육 실시 등

- 과제 수행기간동안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기간별(일, 주, 월, 분기 등)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상세히 작성

| 구분 | | 교육 제목 | 교육대상 | 교육 내용 상세 | 수행 일시 |
|-------------|----------|----------------------|--------------|--|--------|
| 1
단
계 | 1차
년도 |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신규교육 |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 o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 이해
o 연구실 안전법 주요 내용 및 개정 안내 | 분기별 1회 |
| | |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보수교육 | | | |
| | | | | | |
| | | | | | |
| | 2차
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차
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차
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과제 관련 안전관리 방안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시 작성, 아닐 경우 삭제)

가. 과제(기술) 관련 국내·외 안전사고 사례

o 과제 관련 국내·외 안전사고 사례 목록

※ 과제 주요 수행(연구)내용, 취급 물질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 작성

| No. | 구분 | 안전사고 사례 | 발생시점 |
|-----|----------|---------|-------|
| 1 | 국내 | | 2010년 |
| 2 | 국외(국가명칭) | | |
| 3 | | | |
| ... | | | |

o 과제 관련 국내·외 안전사고 사례 상세

※ 상기 목록에 제시한 안전사고 사례의 상세내용(사고경위, 내용, 피해규모, 조치사항 등) 작성

나. 과제(기술) 관련 안전기준 및 준수 방안

o 과제 관련 안전기준

※ 과제 주요 수행(연구)내용, 취급 물질 등과 관련한 안전관리 법률, 기준, 매뉴얼 등을 작성

| No. | 안전기준 | 조항 |
|-----|------|----|
| 1 | | |
| 2 | | |
| 3 | | |
| ... | | |

○ 안전기준 준수 방안

- ※ 상기 목록에 제시한 안전기준의 준수방안(안전 담당자 지정, 규정마련, 점검 및 진단, 교육훈련 등) 작성

다. 과제(기술) 관련 위험성 사전 검토 및 예측 결과

○ 위험성 사전검토 및 예측 결과

- ※ 수행기관 자체 혹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 검토, 예측 결과 주요내용을 작성 (필요 시 별첨으로 서류 첨부)

- (예시) 평가공정 : 시제품 제작

| 주요 내용
(연구장비
구축 및 활용
중심) | 위험요인 | 현재의 예방대책 | 현재의 위험성 | | | 개선대책 | 개선
(예
정)
일자 | 개선 후 위험성 | | |
|----------------------------------|-----------------------------|--|-------------|-------------|--------------------|----------------------------|----------------------|-------------|-------------|---------|
| |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도
(빈도x
강도) |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
도 |
| 예시) 리튬이온
분리막 개발 | 물반응성
물질
사용으로
폭발 위험 | 1. 보호구(보안경,
안전모 등) 착용
2. 작업구역 지정
및 습도관리 | 3 | 3 | 9 | 1.온습도
관리용
제습장치
설치 | 5.4 | 1 | 2 | 2 |
| 예시) 탄소강
슬래브 압연재
시제품 절단 | 공작기계
사용 시 상해
위험 | 1. 보호구(보안경,
안전모 등) 착용
2. 공작기계 사용
매뉴얼 작성 | 3 | 3 | 9 | 1.공작기계
안전 센서
부착 | 5.4 | 1 | 2 | 2 |

라. 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정기·특별 안전점검 등)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계획

○ 과제 수행 중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① 수행기관 자체 점검

- ※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기간별(일, 주, 월, 분기 등) 안전점검 실시 계획을 상세히 작성

② 안전관리 전문기관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컨설팅 등 실시계획을 상세히 작성
(향후 안전관리 이행결과 보고 시, 점검결과 첨부)

○ 과제 종료 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① 안전 책임자

- ※ 과제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동안의 수행기관 안전책임자를 지정

② 수행기관 자체 점검

- ※ 과제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동안,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기간별(일, 주, 월, 분기 등) 안전점검 실시 계획을 상세히 작성

③ 안전관리 전문기관 점검 및 안전진단

- ※ 과제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동안,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컨설팅 등 실시계획을 상세히 작성

◦ 과제 단위의 안전관리 방안

- “안전관리형 과제”란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로 RFP/품목서 상 ‘안전관리’로 지정된 과제를 의미하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각 명시된 항목에 따라 안전사고 사례 분석, 안전기준 준수 방안, 위험성 사전 검토 및 예측결과, 안전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연구개발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40의3호에 따라 제출한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처리 가능)

◦ 위험성 사전검토 및 예측 결과 작성 참고자료

<참고> 위험성 추정 예시

화학물질의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예시

1. 위험성 추정(3단계) : 노출수준(가능성)과 유해성(중대성)을 곱하여 산출

$$\text{위험성(Risk)} = \text{노출수준(Probability)} \times \text{유해성(Severity)}$$

(빈도) (강도)

<표 1> 노출수준(가능성)

| 구분 | 가능성 | 내 용 |
|----|-----|----------------------------------|
| 상 | 3 |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50% 초과 ~ 100% 이하 |
| 중 | 2 |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10% 초과 ~ 50% 이하 |
| 하 | 1 |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10% 이하 |

<표 2> 유해성(중대성)

| 구분 | 중대성 | 노 출 기 준 (TLV-TWA) | |
|----|-----|-------------------------------|----------------|
| | | 발생형태 : 분진(mg/m ³) | 발생형태 : 증기(ppm) |
| 대 | 3 | 0.01 초과 ~ 0.1 이하 | 0.5 초과 ~ 5 이하 |
| 중 | 2 | 0.1 초과 ~ 1 이하 | 5 초과 ~ 50 이하 |
| 소 | 1 | 1 초과 ~ 10 이하 | 50 초과 ~ 500 이하 |

<표 3> 위험성 추정

| 노출수준(가능성) \ 유해성(중대성) | 대(3) | 중(2) | 소(1) |
|----------------------|-----------|-----------|-----------|
| 상(3) | 높음
(9) | 높음
(6) | 보통
(3) |
| 중(2) | 높음
(6) | 보통
(4) | 낮음
(2) |
| 하(1) | 보통
(3) | 낮음
(2) | 낮음
(1) |

2. 위험성 결정(4단계) : 위험성이 높은 순서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표 4> 위험성 결정

| 위험성 크기 | | 허용 가능 여부 | 개선의 정도 |
|--------|----|----------|-------------|
| 7~9 | 높음 | 허용 불가능 | 즉시 개선 |
| 4~6 | 보통 | 허용 가능 | 연간계획에 따라 개선 |
| 1~3 | 낮음 | | 현재 상태 유지 |

II. 수행역량 및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 | | | | |
|----|-----|-------|---------|--|
| 개인 | 국문 | | 국적 | |
| | 영문 | | 국가연구자번호 | |
| 직장 | 기관명 | | 전화번호 | |
| | 부서 | | 휴대전화 | |
| | 직위 | | 전자우편 | |
| | 주소 | (우:) | | |

(2)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 학교명 | 전공 | 학위 | 지도교수 |
|-----------------|-----|----|----|------|
| yy.mm~yy.mm | | | | |
| yy.mm~yy.mm | | | | |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3)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간 | 기관명 | 직위 | 비고 |
|-------------|-----|----|----|
| yy.mm~yy.mm | | | |
| yy.mm~yy.mm | | | |

(4)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종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 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 세부사업명 |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
|------------------|-------|---------|----------|--|------------------|-------------------|
| | | | 당시 소속기관 | | | |
| | | | | yy.mm.dd~yy.mm.dd
(yy.mm.dd~yy.mm.dd) | | |
| | | | | yy.mm.dd~yy.mm.dd
(yy.mm.dd~yy.mm.dd) | | |

* 인력양성 목적 과제 포함

(5)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 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구분
(논문/저서) | 논문명/저서명 | 게재지
(권, 쪽) | 게재연도
(발표연도) | 역할 | 등록번호
(ISSN) | 비고
(피인용 지수) |
|---------------|---------|---------------|----------------|----|----------------|----------------|
| | | | yy | | | |
| | | | yy | | | |

(6)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 지식재산권명 | 국가명 | 출원·등록일 |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 비고 |
|-------------------|--------|-----|--------|----------------------|----|
| | | | | | |
| | | | | | |

(7)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 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실적명 | 내용요약 | 실적연도 |
|----|-----|------|------|
| | | | yy |
| | | | yy |

나.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1) 인적사항

| | | | | |
|----|-----|-------|---------|--|
| 개인 | 국문 | | 국적 | |
| | 영문 | | 국가연구자번호 | |
| 직장 | 기관명 | | 전화번호 | |
| | 부서 | | 휴대전화 | |
| | 직위 | | 전자우편 | |
| | 주소 | (우:) | | |

(2)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 학교명 | 전공 | 학위 | 지도교수 |
|-----------------|-----|----|----|------|
| yy.mm~yy.mm | | | | |
| yy.mm~yy.mm | | | | |
|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 | | | |

(3)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기간 | 기관명 | 직위 | 비고 |
|-------------|-----|----|----|
| yy.mm~yy.mm | | | |
| yy.mm~yy.mm | | | |

(4)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종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 세부사업명 |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개발기관
당시 소속기관 |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
|------------------|-------|---------|---------------------|--|------------------|-------------------|
| | | | | yy.mm.dd~yy.mm.dd
(yy.mm.dd~yy.mm.dd) | | |
| | | | | yy.mm.dd~yy.mm.dd
(yy.mm.dd~yy.mm.dd) | | |

* 인력양성 목적 과제 포함

(5)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구분
(논문/저서) | 논문명/저서명 | 게재지
(권, 쪽) | 게재연도
(발표연도) | 역할 | 등록번호
(ISSN) | 비고
(피인용 지수) |
|---------------|---------|---------------|----------------|----|----------------|----------------|
| | | | yy | | | |
| | | | yy | | | |

(6)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 지식재산권명 | 국가명 | 출원·등록일 |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 비고 |
|-------------------|--------|-----|--------|----------------------|----|
| | | | | | |
| | | | | | |

(7)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실적명 | 내용요약 | 실적연도 |
|----|-----|------|------|
| | | | yy |
| | | | yy |

다.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1) 참여연구자 현황

| 번호 | 소속 기관
(역할) | 신규/
기존/
외부 | 성명
(국적) | 직위 | 생년월일
(성별) | 학위 및 전공 | | | 담당역할 | 참여
기간
(년/월) | 본 과제
인건비
계상률
(%)
(A) |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인건비
계상률
(%)
(B) | 전체
인건비
계상률
합계
(A+B,
%) |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과제
수
(3책/5공) |
|----|---------------|------------------|-------------|----------|------------------|----------|-----------|----------|------|-------------------|----------------------------------|---|---------------------------------------|--------------------------------------|
| | | | | | | 최종
학위 | 전공 | 취득
년도 | | | | | | |
| 1 | KIAT
(주관) | 기존 | 김OO
(한국) | 팀장 | '86.12.02
(남) | 박사 | 전자
공학 | '12 | 책임 | '22.4~
24.12 | 30% | 70% | 100% | 3
(3/3) |
| 2 | | 기존 | 박OO
(한국) | 책임 | '81.03.02
(여) | 박사 | 컴퓨터
과학 | '08 | 실무책임 | '22.9~
24.12 | 50% | - | 50% | 1
(0/1) |
| 4 | KETEP
(공동) | 기존 | 기OO
(한국) | 선임 | '86.03.02
(남) | 박사 | 에너지
공학 | '12 | 공동책임 | '22.4~
24.12 | 30% | - | 30% | 1
(0/1) |
| 5 | | 신규 | 임OO
(한국) | 선임 | '86.03.07
(남) | 박사 | 에너지
공학 | '12 | 실무 | '21.4~
24.12 | 30% | - | 30% | 1
(0/1) |
| 6 | OO대학교
(공동) | 기존 | 이OO
(한국) | 박사
과정 | '88.07.02
(여) | 석사 | 화학
공학 | '20 | 공동책임 | '22.4~
24.12 | 20% | 40% | 60% | 3
(2/3) |

(2) 참여연구자 역할

| 번호 | 구분 | 소속기관 | 성명 | 직급 | 참여 비중(%) | | | | | | 상세 역할 |
|-----|----|-----------|-----|----|----------|----|----|----|----|-----|------------------------------|
| | | | | | 플랫폼 | 장비 | 기술 | 인력 | 기타 | 계 | |
| 1 | 주관 | ○○기술연구원 | 홍길동 | 책임 | 70 | 20 | 0 | 0 | 10 | 100 | - 사업 총괄 |
| 2 | | ○○기술연구원 | | | 10 | 60 | 30 | 0 | 0 | 100 | - 000시험분석 000 등 장비 운
용 관리 |
| 3 | | ○○기술연구원 | | | 10 | 30 | 60 | 0 | 0 | 100 | - 운영위원회 및 장비도입심의회
운영 |
| 4 | 공동 | ○○
대학교 | | | | | | | | | |
| 5 | | ○○
대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3) 연구지원인력 현황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성명 | 국적 | 소속
기관 | 직위 | 학위 및 전공 | | | 담당역할 |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 지원연도 | | | 총
지원기간
(개월) |
|----|----|----------|----|----------|----|----------|------|----------------------------|---------------------------------|------|----|----|-------------------|
| | | | | 최종
학위 | 전공 | 취득
년도 | | | | 1단계 | | | |
| | | | | | | | | | | 1년 | 2년 | 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참여연구자(연구개발기관책임자, 학생연구자 포함)에 대해 작성하며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은 등록이 불가함
- 본 과제가 선정될 경우를 가정하여, 연구개발시작일 기준으로 본 과제를 포함하여 예상되는 인건비 계상률과 참여과제 수를 기재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호의 과제는 참여과제 수(3책/5공)에서 제외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 (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1) 기관명: (역할:)

| | | | | | |
|--------|-----|----|-------|------|--|
| 책임자 | 성명 | 국문 | | 국적 | |
| | | 영문 | | | |
| | 기관명 | | | 전화번호 | |
| | 부서 | | | 휴대전화 | |
| | | 직위 | | 전자우편 | |
| 실무 담당자 | 국문 | | | | |
| | 영문 | | | | |
| | 기관명 | | | 전화번호 | |
| | 부서 | | | 휴대전화 | |
| | 직위 | | | 전자우편 | |
| 주소 | | | (우:) | | |

(2) 기관명: (역할:)

| | | | | | |
|--------|-----|----|-------|------|--|
| 책임자 | 성명 | 국문 | | 국적 | |
| | | 영문 | | | |
| | 기관명 | | | 전화번호 | |
| | 부서 | | | 휴대전화 | |
| | | 직위 | | 전자우편 | |
| 실무 담당자 | 국문 | | | | |
| | 영문 | | | | |
| | 기관명 | | | 전화번호 | |
| | 부서 | | | 휴대전화 | |
| | 직위 | | | 전자우편 | |
| 주소 | | | (우:) | | |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해당 시 작성)

가.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 실적)

|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 지식재산권명 | 국가명 |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
|-------------------|--------|-----|--------------------|
| | | | |
| | | | |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 실적)

|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 수행내용 |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 비고
(수행중/완료) |
|---------|------------------------|---|------|------------------|----------------|
| |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 | | | |
| | | yy.mm.dd~yy.mm.dd
(yy.mm.dd ~yy.mm.dd) | | | |
| | | yy.mm.dd~yy.mm.dd
(yy.mm.dd ~yy.mm.dd) | | | |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 실적)

(단위: 천원)

| 연구개발기관명 | 기술이전 유형 | 기술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기관명 | 기술실시발생일 | 기술료 | 기술료 누적 징수액 |
|---------|---------|---------|---------|---------|-----|------------|
| | | | | | | |
| | | | | | | |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 실적)

(단위: 천원, 달러)

| 연구개발기관명 | 사업화
방식 ¹⁾ | 사업화
형태 ²⁾ | 지역 ³⁾ | 사업화명 | 내용 | 업체명 | 매출액 | | 매출발생
연도 | 기술
수명 |
|---------|-------------------------|-------------------------|------------------|------|----|-----|-----|----|------------|----------|
| | | | | | | | 국내 | 국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단위: 천원)

[illegible]

- 본 과제와 관련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기재
- 현물의 경우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 만료일이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일 이후여야 함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 순번 | 구분 | | 기관명 | | | | |
|----|---|-------|-------|--|--|--|--|
| 1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2 | 법인등록번호 | | | | | | |
| 3 | 대표자 성명/국적 | | | | | | |
| 4 |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 | | | | | |
| 5 | 최대 주주 성명/국적 | | | | | | |
| 6 | 설립 연월일 | | | | | | |
| 7 | 주생산 품목 | | | | | | |
| 8 | 상시 종업원 수 | | | | | | |
| 9 | 전년도 매출액 | | | | | | |
| 10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 | | | | |
| 11 |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 | yyyy년 | | | | |
| | | | yyyy년 | | | | |
| | | | yyyy년 | | | | |
| 12 |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 | yyyy년 | | | | |
| | | | yyyy년 | | | | |
| | | | yyyy년 | | | | |
| 13 |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 자본 총계 | yyyy년 | | | | |
| | | | yyyy년 | | | | |
| | | | yyyy년 | | | | |
| | | 자본금 | yyyy년 | | | | |
| | | | yyyy년 | | | | |
| | | | yyyy년 | | | | |
| 14 |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 | yyyy년 | | | | |
| | | | yyyy년 | | | | |
| | | | yyyy년 | | | | |
| 15 |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 | yyyy년 | | | | |
| | | | yyyy년 | | | | |
| | | | yyyy년 | | | | |
| 16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 | 성명 | | | | |
| | | | 부서 | | | | |
| | | | 직위 | | | | |
| | | | 직장전화 | | | | |
| | | | 휴대전화 | | | | |
| | | | 전자우편 | | | | |
| | | | 팩스 | | | | |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단위: 천원)

| 구분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 | |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 | | 합 계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 | | | | | |
| 연차 | 기관명
(주관/공동/위탁) | 현금 | % | 현금 | 현물 | 소계 | % | 현금 | 현물 | 소계 | % | 현금 | 현물 | 합계 |
| 1단계
1년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1단계
2년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1단계
3년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1단계
4년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 | | | |

2) 연구개발비 총괄 사용계획

가.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 연구개발기관명 | | 연구개발비 | | | | | | | | | | | 간접비 | 합계 |
|---------|----|-------|------------------|------------------|------------------|------------------|-----------|-----------|----------|----|--|--|-----|----|
| | | 직접비 | | | | | | | | | | | | |
| |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 연구시설·장비비 | | 연구
재료비 | 연구
활동비 | 연구
수당 | 소계 | | | | |
| | | | 일반 ¹⁾ | 특례 ²⁾ | 일반 ³⁾ | 특례 ⁴⁾ | | | | | | | | |
| | 현금 | | | | | | | | | | | | | |
| | 현물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현금 | | | | | | | | | | | | | |
| | 현물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현금 | | | | | | | | | | | | | |
| | 현물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현금 | | | | | | | | | | | | | |
| | 현물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총계 | 현금 | | | | | | | | | | | | | |
| | 현물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합니다.

나.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 구분 | | 연구개발비 | | | | | | | | | | |
|------------|----|-------|-------|----|----------|----|-----------|-----------|----------|----|-----|----|
| |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 연구시설·장비비 | | 연구
재료비 | 연구
활동비 | 연구
수당 | 소계 | 간접비 | 합계 |
| | | | 일반 | 특례 | 일반 | 특례 | | | | | | |
| 1단계
1년차 | 현금 | | | | | | | | | | | |
| | 현물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1단계
2년차 | 현금 | | | | | | | | | | | |
| | 현물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1단계
3년차 | 현금 | | | | | | | | | | | |
| | 현물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1단계
4년차 | 현금 | | | | | | | | | | | |
| | 현물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총계 | 현금 | | | | | | | | | | | |
| | 현물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다.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1)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 구분 | | 연구개발비 | | | | | | | | | | |
|------------|----|-------|-------|----|----------|----|-----------|-----------|----------|----|-----|----|
| |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 연구시설·장비비 | | 연구
재료비 | 연구
활동비 | 연구
수당 | 소계 | 간접비 | 합계 |
| | | | 일반 | 특례 | 일반 | 특례 | | | | | | |
| 1단계
1년차 | 현금 | | | | | | | | | | | |
| | 현물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1단계
2년차 | 현금 | | | | | | | | | | | |
| | 현물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1단계
3년차 | 현금 | | | | | | | | | | | |
| | 현물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1단계
4년차 | 현금 | | | | | | | | | | | |
| | 현물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총계 | 현금 | | | | | | | | | | | |
| | 현물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2)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 구분 | | 연구개발비 | | | | | | | | | | |
|------------|----|-------|-------|----|----------|----|-----------|-----------|----------|----|-----|----|
| |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 연구시설·장비비 | | 연구
재료비 | 연구
활동비 | 연구
수당 | 소계 | 간접비 | 합계 |
| | | | 일반 | 특례 | 일반 | 특례 | | | | | | |
| 1단계
1년차 | 현금 | | | | | | | | | | | |
| | 현물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1단계
2년차 | 현금 | | | | | | | | | | | |
| | 현물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1단계
3년차 | 현금 | | | | | | | | | | | |
| | 현물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1단계
4년차 | 현금 | | | | | | | | | | | |
| | 현물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총계 | 현금 | | | | | | | | | | | |
| | 현물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참여연구원 및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수혜학생 기재)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라) 수혜학생은 담당역할에 “수혜학생”으로 기재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행정인력 및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수혜학생(행정조교 등)에 대해 기재)

-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 국가,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을 기재합니다.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공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공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라. 건축비 및 장비비 총괄

- “(1) 건축비 총괄의 합계+(2) 장비구축비 총괄의 합계 + (3) 장비운영비 총괄의 합계”의 총합이 총 연구개발비와 일치해야 함

(1) 건축비 총괄

○ 건축비(총괄)

(단위 : 천원)

| 비 목 | | 현금 | 현물 | 계 |
|--------------|----------------|----|----|---|
| 건축비 | | | | |
| 전용공간(부지매입 등) | | | | |
| 합 계(A) | | | | |
| 민간부담금
내역 | 지자체
민간부담금 | | | |
| | 지자체 외
민간부담금 | | | |
| | 합 계(A) | | | |

- 건축비 일체(전용공간 포함)는 ‘지자체 외 민간부담금’(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지자체 민간부담금(‘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으로만 구성되어야 함(정부지원 연구개발비로는 건축 불가)
 - 기간내 신규 건축의 경우 현금으로 산정
 - 임차 또는 기보유한 경우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이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현물의 부담.과소 집행의 경우 정산시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 할 수 있으므로, 부담 내역의 근거를 확인하여 산정 (예 : 설계비 현물 계상 X, 설계비 현금 O)

○ 기관별 건축비

(단위 : 천원)

| 비 목 | 1단계 | | | | 계 |
|-----|----------------|----------------|----------------|----------------|---|
| | 1년차
(202X년) | 2년차
(202X년) | 3년차
(202X년) | 4년차
(202X년) | |
| 지자체 | 517,876 | 6,509,000 | - | | |
| | 설계비 | 공정 작성 | | | |
| 주관 | | | | | |
| | | | | | |
| 공동1 | | | | | |
| | | | | | |
| 공동2 | | | | | |
| | | | | | |
| 합계 | | | | | |

(2) 장비구축비 총괄

(단위 : 천원)

| 비 목 | | 현금 | 현물 | 계 |
|----------------------------|----------------|----|----|---|
| 장비구입 | | | | |
| 시설·설비 구축 | | | | |
| 사업참여인력 인건비 | | | | |
| 합 계(C=A+B) | | | | |
| 민간부담금
내역 | 지자체
민간부담금 | | | |
| | 지자체 외
민간부담금 | | | |
| | 합 계(B) | | | |
| 정부출연금(A) | | | | |
| 민간부담금 비중 (%) = (B/(A+B)) | | | | |

- 장비구축비 중 ‘지자체민간부담금’(지방자치단체 지원금)+‘지자체 외 민간부담금’(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함(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3) 장비운영비 총괄

(단위 : 천원)

| 비 목 | | 현금 | 현물 | 계 |
|-----------------------------|----------------|----|----|---|
| 장비운영비(재료비, 소모품 등) | | | | |
| 장비운영 및 시험·성능평가
기술개발 | | | | |
| 장비운영·사업수행 교육(재료비,
강사료 등) | | | | |
| 사업참여인력 인건비 | | | | |
| 합 계(C=A+B) | | | | |
| 민간부담금
내역 | 지자체
민간부담금 | | | |
| | 지자체 외
민간부담금 | | | |
| | 합 계(B) | | | |
| 정부출연금(A) | | | | |
| 민간부담금 비중 (%) = (B/(A+B)) | | | | |

- 장비운영비 중 ‘지자체민간부담금’(지방자치단체 지원금)+‘지자체 외 민간부담금’(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함

(4) 현물출연 (기자재/시설/장비) 내역

(단위 : 천원)

| No | 기자재/시설/장비명 | 구입년월 | 내용연수
(만료년월) | 구입금액 | 산정가액
(20%이내) | 현물반영
해당연차 |
|----|------------|-------|----------------|--------|-----------------|--------------|
| 1 | 클린벤치 | 16.08 | 26.07 | 10,000 | 2,000 | 1차년도 |
| 2 | 호모믹서장비 | 17.08 | 27.07 | | | 1~4차년도 |
| 3 | | | | | | |
| 4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현물의 경우, 하기 4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년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 가능
- 1) 본 사업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활용
 - 2)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구입한지 5년 이내
 - 3) 내용연수 만료일이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
 - 4) 타사업으로 구입한 장비일 경우 해당사업 총 연구개발기간을 경과(종료)한 것

3) 연차별 연구개발비 상세 사용계획 (주관연구개발기관 :)

가. 1단계 1년차

(1) 인건비

(단위 : 천원)

| 구 분 | 인력 구분 | 성명 | 직위 | 급여 총액 (A) | 참여 기간 (월) (B) | 총인건비 계상률 (%) (C) | 합 계((A/12)×B×(C/100)) | | |
|--------|-------|------|-----|-----------|---------------|------------------|-----------------------|----|-------|
| | | | | | | | 현금 | 현물 | 계 |
| 내부 인건비 | 기존 인력 | (예시) | 책임 | 50,000 | 12 | 10 | 5,000 | - | 5,000 |
| | | (예시) | 선임 | 30,000 | 12 | 15 | 4,500 | - | 4,500 |
| | | | | | | | | | |
| | 신규 인력 | (예시) | 연구원 | 25,000 | 9 | 50 | 9,375 | - | 9,375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외부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인건비 계상률은 10%이상을 반드시 계상하여야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불인정 회수됨
- 내·외부 및 연구지원인력 구분
 - 내부 :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말하며 소속 여부는 4대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판단함
 - 외부 :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프리랜서, 타교학생(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학생연구자로 구분하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고 외부 인건비가 아닌 학생인건비로 계상), 실습연구원 등
 - 연구지원인력 : 비영리법인의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된 자 한하여 직접비에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함. 단, 행정 지원인력에 대한 연구수당은 계상 및 사용이 불가하며,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간접비에서 계상 불가
- ‘급여총액’은 당해년도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합한 금액을 말함
 1. 참여연구자 +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포함)
 2. 참여연구자 +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총당금

* 급여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급여 총액(연구수당, 연구개발능력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으로써 4대 보험과 퇴직급여총당금을 포함

(2)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단위 : 천원)

| 학사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학·석통합과정 | 석·박통합과정 | 계 |
|-------|-------|-------|---------|---------|-------|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단위 : 천원)

| 구 분 | 성명 | 월급여 | 참여기간
(개월) | 총인건비
계상률
(%) | 합 계 |
|--------|------|-------|--------------|--------------------|-----|
| 박사후 과정 | (예시) | 3,000 | | | |
| 박사과정 | (예시) | 2,500 | | | |
| 석사과정 | (예시) | 1,800 | | | |
| 학사이하 | (예시) | 1,000 | | | |
| 총 액 | | | | | |

(3) 연구시설 장비비

(단위 : 천원)

| 구 분 | | 내 역 | 단 가 | 회 수
(수량, 건) | 합 계 | | |
|--------------|-----------------------|-----|-----|----------------|-----|----|---|
| | | | | | 현금 | 현물 | 계 |
| 연구시설.
장비비 | 연구시설.
장비 구입 · 설치비 | | | | | | |
| | 연구시설.
장비 임차비 | | | | | | |
| | 연구시설.
장비 운영 · 유지비 | | | | | | |
| | 연구인프라 조성비
(건축비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4) 연구재료비

(단위 : 천원)

| 구 분 | | 내 역 | 단 가 | 회 수
(수량, 건) | 금 액 | 비고
(현금/현물) |
|-------|---------------|-----|-----|----------------|-----|---------------|
| 연구재료비 | 연구재료 구입비 | | | | | |
|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 | | | |
| | 연구재료 제작비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5)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 구 분 | 내 역 | 단 가 | 회 수
(수량, 건) | 금 액 | 비고 |
|-------|-----|-----|----------------|-----|----|
| 연구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6) 용역 내역서 (해당 시)

| | | | | |
|----------|-------------|----|-----|--------|
| 용역명 | | | | |
| 발주기관명 | | 주관 | () | 공동 () |
| 용역기간 | (용역비용 : 천원) | | | |
| 목표 및 필요성 | | | | |

| | |
|-------|--|
| 주요 내용 | |
|-------|--|

| | |
|------|--|
| 활용계획 | |
|------|--|

| | |
|-----------|--|
| 용역기관 선정기준 | |
|-----------|--|

-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외주 용역비는 불인정 대상임.

(7) 국외출장 내역서 (해당 시)

| | | | | |
|-------------------------|----|-----|----|----------|
| 출장명 | | | | |
| 출장국가 | | | | |
| 출장자
(참여인력에 한해 전원 기재) | 성명 | 부서명 | 직급 | 출장시 수행내용 |
| | | | | |
| 출장기간 | | | | |
| 과제와의 연관성 및 필요성 | | | | |

| | |
|--------------------------|--|
| 주요일정
(일자별 주요내용 간략 기재) | |
|--------------------------|--|

| | |
|----------------|--|
| 결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
|----------------|--|

나. 1단계 2년차(하위 양식은 상동)

다. 1단계 3년차(하위 양식은 상동)

라. 1단계 4년차(하위 양식은 상동)

4) 연차별 연구개발비 상세 사용계획 (공동연구개발기관 :)

가. 1단계 1년차

(1) 인건비

(단위 : 천원)

| 구 분 | 인력 구분 | 성명 | 직위 | 급여 총액 (A) | 참여 기간 (월) (B) | 총인건비 계상률 (%) (C) | 합 계((A/12)×B×(C/100)) | | |
|--------|-------|------|-----|-----------|---------------|------------------|-----------------------|----|-------|
| | | | | | | | 현금 | 현물 | 계 |
| 내부 인건비 | 기존 인력 | (예시) | 책임 | 50,000 | 12 | 10 | 5,000 | - | 5,000 |
| | | (예시) | 선임 | 30,000 | 12 | 15 | 4,500 | - | 4,500 |
| | | | | | | | | | |
| | 신규 인력 | (예시) | 연구원 | 25,000 | 9 | 50 | 9,375 | - | 9,375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외부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인건비 계상률은 10%이상을 반드시 계상하여야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불인정 회수됨
- 내·외부 및 연구지원인력 구분
 - 내부 :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말하며 소속 여부는 4대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판단함
 - 외부 :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프리랜서, 타교학생(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학생연구자로 구분하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고 외부 인건비가 아닌 학생인건비로 계상), 실습연구원 등
 - 연구지원인력 : 비영리법인의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된 자 한하여 직접비에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함. 단, 행정 지원인력에 대한 연구수당은 계상 및 사용이 불가하며,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간접비에서 계상 불가
- ‘급여총액’은 당해년도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합한 금액을 말함
 1. 참여연구자 +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포함)
 2. 참여연구자 +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총당금

* 급여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자·연구근접 지원인력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급여 총액(연구수당, 연구개발 능력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으로써 4대 보험과 퇴직급여총당금을 포함

(2)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단위 : 천원)

| 학사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학·석통합과정 | 석·박통합과정 | 계 |
|-------|-------|-------|---------|---------|-------|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단위 : 천원)

| 구 분 | 성명 | 월급여 | 참여기간
(개월) | 총인건비
계상률
(%) | 합 계 |
|--------|------|-------|--------------|--------------------|-----|
| 박사후 과정 | (예시) | 3,000 | | | |
| 박사과정 | (예시) | 2,500 | | | |
| 석사과정 | (예시) | 1,800 | | | |
| 학사이하 | (예시) | 1,000 | | | |
| 총 액 | | | | | |

(3) 연구시설 장비비

(단위 : 천원)

| 구 분 | | 내 역 | 단 가 | 회 수
(수량, 건) | 합 계 | | |
|--------------|------------------------|-----|-----|----------------|-----|----|---|
| | | | | | 현금 | 현물 | 계 |
| 연구시설.
장비비 | 연구시설.
장비 구입·설치비 | | | | | | |
| | 연구시설.
장비 임차비 | | | | | | |
| | 연구시설.
장비 운영·유지비 | | | | | | |
| | 연구인프라 조성비
(건축비 미포함)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4) 연구재료비

(단위 : 천원)

| 구 분 | | 내 역 | 단 가 | 회 수
(수량, 건) | 금 액 | 비고
(현금/현물) |
|-------|---------------|-----|-----|----------------|-----|---------------|
| 연구재료비 | 연구재료 구입비 | | | | | |
|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 | | | |
| | 연구재료 제작비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5)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 구 분 | 내 역 | 단 가 | 회 수
(수량, 건) | 금 액 | 비고 |
|-------|-----|-----|----------------|-----|----|
| 연구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6) 용역 내역서 (해당 시)

| | | | | |
|----------|-------------|----|-----|--------|
| 용역명 | | | | |
| 발주기관명 | | 주관 | () | 공동 () |
| 용역기간 | (용역비용 : 천원) | | | |
| 목표 및 필요성 | | | | |

| | |
|-------|--|
| 주요 내용 | |
|-------|--|

| | |
|------|--|
| 활용계획 | |
|------|--|

| | |
|-----------|--|
| 용역기관 선정기준 | |
|-----------|--|

-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외주 용역비는 불인정 대상임.

(7) 국외출장 내역서 (해당 시)

| | | | | |
|-------------------------|----|-----|----|----------|
| 출장명 | | | | |
| 출장국가 | | | | |
| 출장자
(참여인력에 한해 전원 기재) | 성명 | 부서명 | 직급 | 출장시 수행내용 |
| | | | | |
| 출장기간 | | | | |
| 과제와의 연관성 및 필요성 | | | | |

| | |
|--------------------------|--|
| 주요일정
(일자별 주요내용 간략 기재) | |
|--------------------------|--|

| | |
|----------------|--|
| 결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
|----------------|--|

나. 1단계 2년차(하위 양식은 상동)

다. 1단계 3년차(하위 양식은 상동)

라. 1단계 4년차(하위 양식은 상동)

[붙임]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건별로 작성

| | | | | | |
|---|---------------------------|--|---|--------------|--------------------|
| 연구개발기관명 |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 (단계)구입연차 | (x단계)x차년도(2021년) |
| 연구시설·장비명 | | (국문) | 고성능 패킷 캡처 리플레이 시스템 | | |
| | | (영문) | High Performance Packet Capture & Replay System | | |
| 연구장비분류 | | 대분류 | | | 중분류 |
| 모델명 | | IS4010E | | | |
| 제작국가 | | 한국 | | 제작사 | 시스메이트 |
| 구입방법 | | 구매(○) 임차() | | 구입구분 | 내재(○) 외재() |
| 구입(임차)일자(예정) | | 20XX. 5 | | 구입(임차)금액(예정) | 50,000,000원 |
| 공동활용 여부 | | 단독활용(○)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협의후 결정() | | | |
| 연구
시설·
장비
개요 | 구입(임차)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고성능 패킷 수집기와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과제에서 시험하거나 얻어진 결과물을 성능적 측면과 정확도 측면에서 정확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Wired Speed로 패킷을 수집하고 리플레이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 | | |
| | 원리 및 특징 | 10 Gbps (9.95 Gbps) 성능으로 패킷을 캡처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
추가적으로 패킷 샘플링, 패킷 전송, GPS 타임스탬프 기능 지원 | | | |
| | 주요사양 | 10 Gbps POS Monitoring Interface (extensible OC-192c fiber, PPP/HDLC layer 2)
PCI-Express 8x Bus Interface (PCI-Express 8x bus speed, Higher packet DMA)
Hardware-based Packet Capturing Engine | | | |
| | 사용용도
(활용방안) | 실제와 유사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에서 Real Time으로 Wired Speed상에서 패킷을 생성해 내고 명확한 문자로 표현되는지의 검증과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하여 패킷 검증 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어, 실제 네트워크에 거의 유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본 연구의 검증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 | | |
| 활용
계획 |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 년평균 가동율 60% [(24시간X50주) / (40시간X50주)] 이상 | | | |
| | 운영비
확보 방안 | 해당 사항 없음 | | | |
| | 전담인력
확보 방안 | ○○기관 ○○팀에서 관리 및 운용할 계획이며, 전담인력 ○○○ 등 2명 내외 활용 예정
추가적인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202X년 신규채용 예정 | | | |
| | 유지보수
방안 | 판매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판매 업체의 전담 인력 활용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 | |
| | 기타 | | | | |
|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 | 동일/유사장비명 | 관리부서 | 취득일시 | 공동활용 가능여부 |
| | | PLS-1000 | 지식정보보안연구부 | 2006 | 활용불가(), 제한적 활용(○) |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단에서는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패킷 수집 시스템과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수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본 과제에서 요구되는 고성능에는 부족한 사양임 | | | |
| (구매 시) 타 기관
소유장비 공동활용
또는 임차사용
불가사유 | | 고성능 패킷 수집 장비는 패킷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수집된 패킷을 분석하는 패킷 분석 엔진기술 개발과 알고리즘 검증 및 타당성 시험을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량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개발 제품에 접속시켜 지속적으로 시험하여야 하여야 함으로 다른 과제와 공동 활용이 어렵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본 과제에서 개발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개발 기간 동안 계속 개발 및 시험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매가 임차보다 경제적이다. | | | |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작성 안내 (제출시 본 안내문 삭제)

- 연구개발계획서에 적은 장비명과 일치하도록 장비명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된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3천만원 이상 구축예정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 건별로 작성함 (구입, 임차 모두)
- 구축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www.itube.re.kr)에 등록 필수 (국가연구시설 장비관리서비스(nfec.ntis.go.kr)에는 자동으로 정보 연동)
- 장비분류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별표1]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 참조

[참고 2]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 (제출시 삭제)

| 구분 | 내 용 | 출연금 인정기준 | |
|-----|---|----------|--------|
| | | 非예타 | 예타 |
| 건축비 | 부지매입, 건축조성, 리모델링, 설계/감리비 | 불인정 | 불인정 |
| 장비비 | [장비구축비]
■ 장비구입, 시설·설비 구축(테스트베드 등)
■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도입 기획 등)
※ 센터홍보 및 DB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은 제외 | 70% 상한 | 50% 상한 |
| | [장비운영비]
■ 장비운영비(재료비, 소모품, 전기료 등)
■ 장비운영 및 시험·성능평가 기술개발(방법론 개발 등)
■ 장비운영·사업수행 교육(재료비, 강사료 등)
■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관리·운영, 기술상담·자문·지도 등) | 70% 상한 | 50% 상한 |
| R&D | '장비운영 및 시험·성능평가 기술개발'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 불인정 | 50% 상한 |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고 3]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 (제출시 삭제)

- 단계정산을 실시함에 따라 상시점검수수료 및 정산수수료를 책정된 기준에 따라 연차별로 차등 책정 (단, 단년도 과제는 예외)
 - 연차별 상시점검 수수료 : 현 정산수수료의 85% 수준 적용
 - * 상시점검 정의에 따른 분기별 상시점검 추진 및 상시점검 보고서 제출
 - 정산수수료 : 매 연도별 상시점검이 수행된 연구개발비 기준 정산수수료의 15%씩 가산하여 책정

(예시) 3년 일괄정산과제의 경우 : 매년 <정산수수료 표준액> 기준 정산수수료 산정

| 구분 | 상시점검수수료 | 정산수수료 | 연차가산 | 비고 |
|--------------|---------|-------|------|---|
| 1차년도 | 0 | X | X | 정산수수료의 85% |
| 2차년도 | 0 | X | X | 정산수수료의 85% |
| 3차년도
(최종) | X | 0 | 0 | 3차년 정산수수료
+ 1차년 정산수수료 15%
+ 2차년 정산수수료 15% |

○ 정산수수료 표준액

| 구분(연구개발비 규모*) | 단가(천원) |
|-------------------|--------|
| 1억원 미만 | 987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185 |
|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1,515 |
|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1,647 |
|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1,845 |
| 30억원 이상 | 2,043 |

* 연구개발비 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예: 지방비)의 합(현물은 포함되지 않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 공동연구개발기관 수 | 가산금 |
|------------|-------------------------|
| 0개 | 가산금 없음 |
| 1개 | 수수료의 10% |
| 2개 이상 |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 정산수수료 산출 예시

- 연구개발비가 2억원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 없을 경우 : 1,185,000원
- 연구개발비가 2억원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 1개 있을 경우
: 1,185,000원 X 1.1(10%가산)=1,303,500원
- 연구개발비가 2억원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 2개 있을 경우
: 1,185,000원 X 1.15(15%가산)=1,362,750원
- 연구개발비가 2억원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 3개 있을 경우
: 1,185,000원 X 1.20(20%가산)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 | | |
|-----------------------|-----------------------|----------|---------------|
| 세부사업명 | | 연구개발과제번호 | (협약전 접수번호 작성) |
| 연구개발과제명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 연구책임자 | |
|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책임자) | ○○연구소(홍길동), ○○대학(김영수) | | |

위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연구개발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연구개발과제가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연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나머지 각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대표하여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위임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에게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연구책임자)

_____ (인) _____ (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책임자)

_____ (인) _____ (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책임자)

_____ (인) _____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 법인기관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연구소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도 서명 날인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 모두가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 별 날장 제출도 가능함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 | |
|-----------|--|----------|---------------|
| 세부사업명 | | 연구개발과제번호 | (협약전 접수번호 작성) |
| 연구개발과제명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 연구책임자 | |
| 전체 연구개발기간 | |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제2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연 구개발과제 선정에 위한 자격요건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 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 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정 산, 제재부가금 부과,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보의 검증

☐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주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동의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국가연구자번호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국가연구자번호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시 과제수행현황(참여연구자)을 포함한 요구자료 제공
-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취급은행, 국가 R&D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조사, 기술료 징수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수행에 대한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 선정, 평가, 관리 업무의 수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주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개발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참여연구자 정보

| 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주민등록
번호 ²⁾ | 국가연구자
번호 | 국가연구
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3책/5공) ³⁾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자필서명) |
|-------------------|----|----|--------------------------|-------------|--|------------------------------------|
| ○○○ ¹⁾ | | | | | 90%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근접지원인력

| 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주민등록
번호 ²⁾ | 국가연구자
번호 | 국가연구
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³⁾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자필서명) |
|-------------------|----|----|--------------------------|-------------|---|------------------------------------|
| ○○○ ¹⁾ | | | | | 100% | |
| | | | | | | |

연구개발기관 동의란

| 연구개발기관명 | 법인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 법인 날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서명) |
|---------|------------------------|-----------------------------|
| | | |
| | | |
| | | |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1)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기재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기재
- 2)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 부여자는 주민번호 기입 생략가능
- 3) 전체 인건비계상률에는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될 경우, 연구개발시작일 기준으로 본 과제를 포함하여 예상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 계상률을 기재하고,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는 본 과제를 제외하고 수행중인 과제 수를 3책5공으로 표기(연구근접지원인력은 해당사항 없음)하여 기재하여야 함
- (예시) 연구개발시작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수는 5개 수행중이며 5개 과제에서 주관연구개발연구책임자를 2개를 맡을 경우 2/5로 기재
- ※ 참여연구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연구윤리 · 청렴 및 보안서약서

| | | | |
|-----------|--|----------|---------------|
| 세부사업명 | | 연구개발과제번호 | (협약전 접수번호 작성) |
| 연구개발과제명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 연구책임자 | |
| 전체 연구개발기간 | | | |

본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윤리 및 청렴 서약

-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 연구진실성 보호, 학술지 투고 등 학문교류에 따른 연구윤리, 인간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준수,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의 조성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연구개발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 공정한 연구개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금지와 자부심을 갖고 연구개발 수행에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서약

- ☐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및 과정의 종료 후에도 허락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고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완료 혹은 중단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것임을 인지하였습니다.

□ 작성자 정보

| 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국가연구자번호 | 연구윤리, 청령 및
보안서약서 동의
(자필서명) |
|-------------------|----|----|---------|----------------------------------|
| ○○○ 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한 국 산 업 기 술 진 흥 원 장 귀하

1)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와 연구근접
지원인력도 포함하여 기재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기재

※ 참여연구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 | | |
|-----------|--|----------|---------------|
| 세부사업명 | | 연구개발과제번호 | (협약전 접수번호 작성) |
| 연구개발과제명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연구책임자 | |
| 전체 연구개발기간 | | | |

본 사업의 신청(수행)을 위한 현금·현물부담금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연차별 현금 납입 및 현물 부담(확약)

(단위 : 천원)

| 항 목 | 년 차 | 1단계 | | | | 계 |
|-----|-----|-----------------|-----------------|-----------------|-----------------|---|
| | | 1차년도
(202 년) | 2차년도
(202 년) | 3차년도
(202 년) | 4차년도
(202 년) | |
| 현 금 | | | | | | |
| 현 물 | | | | | | |
| 계 | | | | | | |

2. 연차별 현물 부담금액 및 내용

(단위 : 천원)

| 구 분 | | 1단계 | | | |
|--------------|---------|-----------------|-----------------|-----------------|-----------------|
| | | 1차년도
(202 년) | 2차년도
(202 년) | 3차년도
(202 년) | 4차년도
(202 년) |
| 인 건 비 | 출 연 금 액 | | | | |
| | 주요출연내용 | | | | |
| 연구시설·
장비비 | 출 연 금 액 | | | | |
| | 주요출연내용 | | | | |
| 연구재료비 | 출 연 금 액 | | | | |
| | 주요출연내용 | | | | |
| 연구활동비 | 출 연 금 액 | | | | |
| | 주요출연내용 | | | | |
| 간접비 | 출 연 금 액 | | | | |
| | 주요출연내용 | | | | |
| 계 | | | | | |

* 별첨 : 현물납입 내역 관련 증빙서류

202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명)

(단체장명)

(인)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 | | |
|-----------|--|----------|---------------|
| 세부사업명 | | 연구개발과제번호 | (협약전 접수번호 작성) |
| 연구개발과제명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연구책임자 | |
| 전체 연구개발기간 | | | |

본 사업의 신청(수행)을 위한 현금·현물부담금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연차별 현금 납입 및 현물 부담(확약)

(단위 : 천원)

| 항 목 \ 년 차 | 1단계 | | | | 계 |
|-----------|-----------------|-----------------|-----------------|-----------------|---|
| | 1차년도
(202 년) | 2차년도
(202 년) | 3차년도
(202 년) | 4차년도
(202 년) | |
| 현 금 | | | | | |
| 현 물 | | | | | |
| 계 | | | | | |

2. 연차별 현물 부담금액 및 내용

(단위 : 천원)

| 구 분 | | 1단계 | | | |
|--------------|---------|-----------------|-----------------|-----------------|-----------------|
| | | 1차년도
(202 년) | 2차년도
(202 년) | 3차년도
(202 년) | 4차년도
(202 년) |
| 인 건 비 | 출 연 금 액 | | | | |
| | 주요출연내용 | | | | |
| 연구시설·
장비비 | 출 연 금 액 | | | | |
| | 주요출연내용 | | | | |
| 연구재료비 | 출 연 금 액 | | | | |
| | 주요출연내용 | | | | |
| 연구활동비 | 출 연 금 액 | | | | |
| | 주요출연내용 | | | | |
| 간접비 | 출 연 금 액 | | | | |
| | 주요출연내용 | | | | |
| 계 | | | | | |

202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명)

(대 표)

(인)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연구개발기관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 |
|-----------|--|-----------|---------------|
| 세부사업명 | | 연구개발과제번호 | (협약전 접수번호 작성) |
| 연구개발과제명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연구책임자 | |
| 전체 연구개발기간 | | 소속 연구개발기관 | |

| 검토 내용 | 해당 여부 | |
|---|-------|-----|
| | 예 | 아니오 |
| ☐ 공고 내용 부합 여부
◦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가? | | |
| ☐ 신청자격 부합 여부
◦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가?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가? | |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 |
| ☐ 참여제한 여부
◦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 | | |
|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하였는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 | | |
| ☐ 인건비 계상률 초과, 최소 인건비 계상률 등 준수 여부
◦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하는가?
◦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최소 참여 인건비계상률은 10%를 충족하지 못하는가?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해당 신청기관과 상이한가?
(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제출일자 : 20 . . .

연구개발기관명 : (인)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 (인)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